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RFID 라벨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 사 장			공 소 시 효 재 기			보 존		제 질		제 호		년					
						[Redacted] 검찰청			장기		단기												
<p>검사 [Redacted] 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p>																							
2016년 형제65896호				결 정		2016. 8. 31.				검 사		[Redacted]		(인)									
피 의 자						죄 명						주 문											
[Redacted]						의료법위반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p>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p>																							
부 수 처 분										명 령		집 행		인									
석방지휘/소재수사지휘/지명수배(통보),해제																							
(해당없음)																							
압 수 물 처 분										명 령		집 행		인									
가환부대로본환부/제출인환부/피해자환부/보관/폐기/국고귀속																							
(해당없음)																							
비 고																							
집행		사 건				압 수				결과통지													

3. 범죄사실

피의자 ○○○는 ○○○○ ○○○○ 내과의원 의사이고, ○○○은 위 병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의자 ○○○

피의자는 2014. 2. 18. 그 곳에 근무하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방사선사)인 ○○○에게 위 의원을 방문한 환자 ○○○에 대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정맥주사를 수반하는 갑상선 검사를 교사했다.

이로써 피의자는 의료인이 아닌 ○○○에게 의료행위를 교사했다.

나. 피의자 ○○○은

피의자는 위 ○○○의 교사에 따라 피의자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경 위 환자 ○○○의 손등과 팔꿈치 안쪽 부위에 정맥주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의료인이 아님에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였다.

6. 수사결과 및 의견

피의자 ○○○가 의사이고, 피의자 ○○○이 방사선사이며 피의자 ○○○의 지시에 의하여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인 피의자 ○○○이 정맥주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 ○○○는 ① 당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의심되어 이를 검사하기 위하여 '테크네슘'이라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주입하는 갑상선스캔을 위 병원에 방사선사로 근무하는 ○○○으로 하여금 위 검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 위 ○○○은 자신의 지시를 받아 환자의 팔꿈치에 위 정맥주사의 방법으로 '테크네슘'이라는 방사선 동위원소 주입했으며, ② 정맥주사의 행위가 치료를 위한 목적인 경우는 방사선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방사성동위원소를 통한 핵의학 검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

조 2호」에 의하면 「방사선사: 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과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 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어 방사성작업종사자인 방사선사의 업무에 당연히 해당하며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오히려 의료인이라는 일반 의사나 간호사를 취급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진술한다.

피의자 ○○○의 민원요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민원회신서(기록 제179쪽)에 의하면 「‘핵의학과’에서 ‘테크네슘 99m(0.5cc 이하의 적은 양에 한정)를 이용한 핵의학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방사선사 또는 간호사도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감독하에 테크네슘 99m 정맥주사를 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회신내용이다.

살피건대, 보건복지부의 민원회신서(기록 제179쪽), ○○○에 대한 방사선사면허증사본(기록 제686쪽), 방사선안전교육에 대한 수료증사본(기록 제187쪽) 등 보아 피의자 ○○○은 테크네슘 주입에 수반되는 정맥주사를 행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허용하는 방사선사(기록 제686, 687쪽)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테크네슘을 정맥주사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가 위 ○○○에게 교사한 행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의자들 모두 혐의없음 의견임.